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안

의안번호	제395호
의결년월일	2000. 10. 20 (제81회)

발의년월일 : 2000. 10. 18

발 의 자 : 장전석 의원 외 25인

1. 주 문

-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교부율과 특별재정보전금의 개선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문함

2. 제안이유

- 지난해까지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 대비 인구 50만 명 이상 시는 50%, 기타 시·군은 30%를 정률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 왔으나,
- 금년부터는 도세징수금 교부제도가 재정보전금 제도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는 보통교부세 253백만원을 교부받았을 뿐 특별재정보전금을 배분받지 못하는 등 재정적 손실이 무려 176억원에 이르고 있음
- 우리 시는 타시·군에 비해 도세징수액이 매우 많으나 교부세 교부단체라 하여 교부액이 매우 적은 반면 우리 시보다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원, 성남, 안양 등 경기도 내 7개 자치단체는 교부세 불교부단체라 하여 연 100억~300억원의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고 있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정보전금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도세징수 교부와 관련이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불합리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한 징수교부율 3%를 시·군 공통 30%로 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서 규정한 재정보전금 배분비율로 재정보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시 보통교부세가 50억 원 미만인 자치단체에도 교부되도록 개정

재정보전금제도개선건의문(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정보전금제도가 시·군 상호간의 합리적인 자원조성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특별재정보전금의 경우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인구, 면적 등 기준지표의 설정없이 교부세를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닌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보전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많고 적은은 전혀 고려치 않고 보통교부세 교부여부만을 전제로 배분하고 있어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하겠습니까.

부천시 1979년이래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지정되어 253백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로 인하여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재정손실에상액이 무려 17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우리 시보다 양호한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시 등 도내 7개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어 연 100억~300억원의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는 등 현행 재정보전금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수도권 거점도시로 TV경마장 및 경륜장 개장과 중동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도세징수액은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많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재정보전금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수감소로 신·구도시간의 균형발전과 녹지공간 확충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환경보존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욕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한 징수교부율 3%를 시·군 공통 30%로 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재정법 24조의2에서 규정한 재정보전금 배분비율로 재정보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재정보전금 배분시 보통교부세가 50억원 미만인 자치단체에도 교부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회는 재정보전금제도의 시행을 통한 균형배분과 발전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시와 같이 극단적인 모순이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도록 불합리한 관계규정의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간절히 권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0. 10. .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